

Client Alert

October 2017

역외에서 수행된 서비스 비용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도입

소득세 (면제) (No 9) 명령 2017 ("면제 명령")은 2017년 10월 24일 연방 관보에 실렸습니다. 면제 명령은 국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몇몇 상황 하의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1967 ("소득세법")의 109B 조항의 원천징수세 의무는 면제된 소득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경

소득세법의 4A 조항은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간주되는 일부 특별 소득에 대해 간략하게 규정하며, 다음은 일부입니다:

- (i) 부동산의 사용, 또는 공장(시설), 장비 혹은 기타 기구의 설치 혹은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지급된 비용
 - (ii) 과학, 산업 혹은 상업에 관련, 벤처 사업, 프로젝트 등의 행정 관리 혹은 기술 관리로 제공된 서비스에 지급된 비용
- (본 자료에서는 모두 "비용"이라고 지칭함)

동 비용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되어 지급된 경우, 소득세법 109B 조항에 의거 10%의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입니다.

2017년 1월 17일 이전에는 소득세법 15A 조항이 말레이시아에 발생하는 특별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위 소득세법 4A 조항의 (i), (ii)와 같은 비용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수행된 서비스이며, (i) 지급의 의무가 정부, 주정부, 지역 당국, 혹은 말레이시아 거주인인 경우, 혹은 (ii)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된 사업의 지출 혹은 지급인 경우.

그러나, 2017년 1월 17일부터 집행된 수정 규칙은 14A 조항을 삭제하여 집행되었고, 이는 국제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즉, 말레이시아 역외 지역에서 비거주자가 수행하여 말레이시아로 공급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지급한 비용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109B 조항에 의거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윤 폭에 영향을 미친 상업적인 관점 뿐 아니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의 관점에서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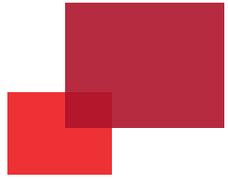
Adeline Wong
Partner
+603 2298 7880
Adeline.Wong@WongPartners.com

Wong Kae Jeen
Senior Associate
+603 2298 7855
KaeJeen.Wong@WongPartners.com

Tan Yi Lyn
Senior Associate
+603 2298 7847
YiLyn.Tan@WongPartners.com

기소예

부장, 한국기업지원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



면제 명령

면제 명령은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수행되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주목하여 할 부분은 면제 명령은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수행되어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 면제를 규정할 뿐, 소득세법 15A 조항에 규정된 비용들은 지속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특별 소득의 파생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면제 명령은 2017년 9월 6일 날자로 귀속 시행되며, 이는 2017년 9월 6일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세 금액을 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면제 명령은 2017년 1월 17일에서 2017년 9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수행된 서비스에서 대한 비용은 소득세 109B 조항의 원천징수세 조항이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중과세방지조항의 적용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논평

Wong & Partners는 14A 조항의 삭제가 야기하는 문제들과 우려들을 강조하여 재무부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그룹들, 상의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재무부의 면제 명령은 2017년 1월 이래 기업들이 보고해온 원천징수세 이슈들을 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면제 명령의 시행시기는 면제 명령의 소급효로 인한 여전히 여러가지 실질적인 이슈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면제 명령의 시행일(2017년 9월 6일)과 면제 명령의 발표일(2017년 10월 24일)간의 시간 간격이 있는 바, 동 기간 동안 지급된 원천징수세는 말레이시아 국세청 (IRB)에서 환불을 해줄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

**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Wong & Partners 에게 있습니다. 부분 혹은 전문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